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신탁받아 보관·관리하고 이에 기초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7조제5항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4항제11호: 신탁업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제1항제2호”를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는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a-1-2, 1a-4-2, 2a-1-2 및 2a-4-2”을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로 하고 제2호의 “2-14-1, 2-14-2, 2l-1-1 및 2l-1-2”을 “2-1

4-1, 2-14-2, 2l-1-1, 2l-1-2, 2o-12-1, 2o-12-2, 2o-14-1 및 2o-14-2”
로 한다.

제11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예탁결제원이 제7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20조제1항제1호 중 “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
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를 “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로 한다.
제1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
족하는 자를 말한다.

제12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분증권 :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
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수익증권 :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

제137조제3항제1호 중 “제178조제1항제1호”를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로 한다.

제137조제3항제2호 중 “소액출자자”를 “소액투자자”로 하고, “발행인과

인수인”을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으로 한다.

제137조제3항제3호 중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으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분증권 : 발행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나. 수익증권 :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제177조를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를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0-121-1 또는 20-121-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전자등록 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에 한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및 그 수량을 공표

할 것

나. 주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일치하는 경우(매수자와 매도자가 결제를 위한 증권계좌를 동일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과 제한되지 아니하는 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마.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바. 마목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 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

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및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주권”은 “수익증권”으로 본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것
3.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4. 제3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 인수 또는 주선한 증권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지분증권은 이해 상충 방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4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 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에 제4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의2. 제178조의2를 위반하여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20에 제13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의2. 제178조의2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심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 발행한 수익증권의 발행, 평가, 판매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별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0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300
1a-4-2	투자매매업	이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15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20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l-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l-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4-2	투자중개업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통화·이자율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a-4-2	투자중개업	이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100
2o-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o-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4-2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3-1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4-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0

		탁채산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채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채산	전문투자자	50

비고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 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1a-1-2, 1a-4-2, 2a-1-2 및 2a-4-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2-1-1, 2-1-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 영 제179조에 따른 업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2-11-1,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2-12-1, 2-12-2는 제17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2-14-1, 2-14-2는 제178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삭제 <2015.10.23.>

11. 삭제 <2015.10.23.>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a-1-2, 1a-4-2, 2a-1-2 및 2a-4-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채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2o-12-1 및 2o-12-2는 제178조의2제1항,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③ (생략)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1. ~ 10. (생략) <u><신 설></u> ⑤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업 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법 제7조제6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 바. (생략) <u><신 설></u>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u> <u>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신</u> <u>탁받아 보관·관리하고 이에</u> <u>기초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u> <u>경우</u> ⑤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제4항제11호: 신탁업</u>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생략)

----- 제1
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6.·7. (생략)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1a-4-2, 2a-1-2 및 2a-4-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같은 표 2-14-1, 2-14-2, 2l-1-1 및 2l-1-2를 제외한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

②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 -----
-----.

1. (현행과 같음)

2. -----
----- 2-14-1, 2-14-2, 2l-1-1, 2l-1-2, 2o-12-1, 2o-12-2, 2o-14-1 및 2o-14-2 -----

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제119조(법 제3편 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생략)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 6. (생략)

<신 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
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
(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

제119조(법 제3편 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 6. (현행과 같음)

7. 한국예탁결제원이 제7조제4
항제11호에 따라 발행하는 수
익증권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
상) ① -----

1. -----

---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
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
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3. (생략)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출자
자”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
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
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
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
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
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
지 아니한다.

<신설>

및 제178조의2 -----

2. 3. (현행과 같음)

② ----- “소액투자자”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분증권 : 해당 법인이 발행
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
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
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

<신 설>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② (생략)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증권의 매출이 제17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할 것
2. 제120조제2항에 따른 소액출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매출하는 것일 것
3.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수익증권 :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제178조 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

2. ----- 소액투자자-----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

3. ----- 다음 각 목의 구분 -----

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나.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
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
류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
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
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
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
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
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
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
래) ① (생략)
②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
자 외의 자는 증권시장 및 다자
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

가. 지분증권 : 발행인, 발행
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
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나. 수익증권 : 신탁재산의 운
용 및 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

----- 제178조제1항, 제178
조의2 및 제179조-----

-----.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
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신 설>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
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
o-12-1 또는 2o-12-2의 인가
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
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전자등록 또는 예탁결제
원에 예탁된 주권에 한한다)
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
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
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
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
및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일치하는 경우(매수자와 매도
자가 결제를 위한 증권계좌를
동일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에게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이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과 제한되지 아니하는 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마.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바. 마목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 또는 예
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를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
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
호가 및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
의를 통하여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
킬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
를 수행할 것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0-14-1 또는
20-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
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
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주권”은 “수익증권”으로 본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것

3.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4. 제3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 인수 또는 주선한 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지분증권은 이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 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u>해상충방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 행위 금지의 예외)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44